

主要國家의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制度에 관한 考察과 그 導入方案

金 英 仙

(仁川大學校 副教授・法學博士)

◀ 目 次 ▶

I. 序 論

II.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에 관한 基本的 考察

1.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의 意義
2. 主要國家의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制度
3. 環境汚染事故의 特性
4.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의 機能
5. 保險者의 損害補償範圍
6. 免責事項
7. 免責金額과 最高限度額
8. 保險料
9. 共同保險

III.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의 導入方案

1. 強制保險
2.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의 補償範圍
3. 保險料
4. 再保險制度의 檢討

IV. 結 論

I. 序 論

社會가 發達하면서 人口의 都市集中과 産業化, 에너지革命 및 科學의 發達에 힘입어 經濟發展을 最高地上目標로 삼는 經濟政策의 실현은 經濟成長을 초래하여 인류생활을 운택하게 하였고 또한 많은 便宜性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인류문화발달을 가져왔지만 반면에 생활의 都市化와 인간의 消費指向性은 家庭에서 처리하여야 할 廢棄物을 増加시켰고 高度의 産業發達은 産業的인 廢棄物 또한 増加시킴으로써 環境을 汚染시키고 이로 인하여 사람의 生命, 身體 및 財産上의 損害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自然生態界의 多樣性을 破壞하게 되었다. 오늘날 環境問題는 國內外를 막론하고 증대한 社會問題로 인식되기에 이르러 國際的으로도 하나 뿐인 地球를 살리기 위해 國境을 초월한 環境規制를 위한 協力을 하여야 할 人類共同의 시급한 先決課題로 인식되었다.

環境問題는 科學者, 經濟學者 및 法學者들의 研究와 國際間의 協力에 의하여 다각적으로 解決하

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각국은 국내적으로는 환경을規制하는 政府機關을 설치하고 環境業務를 전담하도록 하며 國際적으로는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UN人間環境會議가 개최되어 人間環境宣言이 채택된 이래로 1992년에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제2회 UN人間環境會議가 개최되어 環境과 開發에 관한 論議를 한 바 있다.¹⁾

家庭의인 廢棄物이나 工場 또는 일정한 施設物을 이용하는 産業體에서 排出되는 産業廢棄物은 그 排出量을 되도록이면 감소시키도록 하고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終末處理등 環境汚染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行政的, 法律的인 規制, 監督 내지는 統制를 하여야 할 것이다. 1984년 인도 보팔에서의 가스漏出事故의 발생으로 環境危險의 潛在強度가 엄청난 것임이 實證되어 3,500명의 死亡者와 60만명의 被害者를 내고 推定損害額이 1천억달러에 달하는 것이었고²⁾ 1986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체르노빌原電事故에서는 8000명의 死亡者와 수만명의 罹災民을 발생시킨 기억도 채 가시기 전에 1991년에는 국내적으로는 온 국민을 경악시킨 페놀汚染事故가 발생하여 낙동강지역주민들의 보건, 위생 및 생명을 위협하는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 1993년 4월 7일에는 역시 러시아에서 核廢棄物貯藏탱크爆發事故가 발생하여 많은 被害가 예측되며 그 汚染發生物質이 세계의 어느 지역까지 전파될지 몰라 그

危險으로부터의 待避策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단 環境汚染事故가 발생하면 그 被害者의 損害를 救濟하고 그 廢棄物을 除去하는 막대한 淨化費用을 어떻게 調達하며 이를 充當할 것인가 그 對策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環境汚染事故는 크게 나누어 海洋에서 발생하는 油類汚染事故와 陸上에서 발생하는 環境汚染事故로 나누어지는데³⁾ 油類汚染事故로 인한 海洋汚染損害에 대하여는 油類汚染責任에 관한 油槽船所有者의 自主協約(Tanker Owners' Voluntary Agreement Concerning Liability for Oil Pollution, 1969(TOVALOP) 및 油槽船의 油類汚染責任에 대한 暫定的 追加에 관한 契約(Contract Regarding on Interim Supplement to Tanker Liability for Oil Pollution, 1971(CRISTAL))에 기초를 둔 油槽船所有者의 油類汚染損害에 대한 責任을 補償하는 "P & I"保險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⁴⁾ 陸上에서의 環境汚染事故에 대하여는 그 被害의 救濟를 확보하는 하나의 方案으로서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制度가 창안되어 英國과 美國에 이어 日本에서 이를 施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保險監督院이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의 開發을 검토하고⁵⁾ 있는 바 本 論文에서는 선진 각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을 概觀하고 問題點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方案을 모색할 것을 研究目標로 삼는다.

1) 拙稿,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에 관한 研究", 海嶽 李範燦教授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海嶽 李範燦教授華甲紀念商事法の 基本問題, (서울:三英社), 1993.5.20., 717면 註3참조.

2) 朴恩會, "環境危險의 保險化 方案", 보험개발연구 제3권(1991.제2호), 4면.

3) 河東燮, "환경오염 사고와 오염배상책임보험", 위험과 보험, 1991, 여름호, 27면.

4) 앞 拙稿, 719면.

5) 中央日報, 1992.11.16., 6면.

II.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에 관한 基本的 考察

1.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의 意義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Die Versicherung der Umwelthaftung)이란 環境汚染으로 인하여 被害를 입은 第三者의 損害를 賠償할 것과 環境汚染을 除去하기 위한 費用을 補償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保險이다. 즉 이 保險은 突發적이고 偶然한 事故는 물론 通상의 排水나 排氣에 의한 環境汚染으로 발생한 損害가 保險의 對象으로 되고 따라서 貯藏施設이나 配管으로 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汚染物質의 漏出이나 일시적인 汚水の 排出에 의하여 環境을 汚染시킨 결과 第三者에게 입힌 損害에 대하여 保險金을 支給하는 保險이다. 따라서 이 保險은 保險證券에 기재한 施設로 부터 발생한 環境汚染으로 인한 사람의 健康被害나 財産의 損害 및 漁業權의 侵害에 관하여 保險期間中에 提起된 損害賠償請求에 의하여 法律上賠償責任을 負擔함으로써 被保險자가 입은 損害를 補償한다. 環境汚染이란 연기, 煤煙, 酸, 알카리廢液 등 汚染物質이 地中(土壤汚染)이나 大氣(大氣汚染)중, 水中(水質汚染)으로 排出되거나 漏出됨으로써 身體障害나 財物損壞등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先進各國이 環境危險을 保險에 부치는 유형을 보면 一般賠償責任保險(General Liability Insurance : CGL)의 汚染事故擔保特約(Pollution Lia-

bility Coverage Extention Clause)과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EIL)으로 二元化되어 있는데 전자는 대체로 突發적이고 偶然한 事故(sudden and accidental events)만을 擔保하고 후자는 漸進의인 事故(gradual pollution)을 擔保하고 있다.⁶⁾

2. 主要國家의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制度

가. 美國

美國에서는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이 처음부터 독립한 保險으로 개발되어 온 것이 아니고 企業의 第三者에 대한 賠償責任을 총괄하여 擔保하는 包括一般賠償責任保險(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 CGL)에 의하여 事故發生時(occurrence)를 保險事故로 하여 故意로 발생되거나 사전에 예측가능하였던 事故가 아닌 한 短期的이며 偶然한 事故 뿐만 아니라 繼續의이거나 반복적인 事故까지도 補償해 왔다. 1967년 油槽船 Torrey Canyon號의 沈沒事故와 1969년 Santa Barbara海岸에서의 油田爆發事故등 大型環境汚染事故로 인하여 保險者들의 保險金支給이 急増하자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環境汚染事故에 대한 재고를 하고 1973년 改正된 包括一般賠償責任保險에서 漸進의인 汚染事故에 대한 補償을 排除하고 免責하게 되었다.⁷⁾ 그러나 1970년 中반부터 美國政府와 議會가 産業廢棄物에 의한 環境汚染에 대한 規制와 毀損된 環境復舊對策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自然保存法(The Resource

6) 朴恩會, 앞 論文, 9면.

7) 李在珪, “環境保險의 利用에 관한 少考-有害 産業廢棄物에 의한 汚染事故를 中心으로-”, 보험개발연구 제2권(1991. 제1호), 10면. ; Kenneth S. Abraham, “Environmental Liability and The Limits of Insurance”, Columbia Law Review (Vol. 88), 1988., p. 959, pp. 961-964.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RCRA))과 環境復舊補償 및 賠償責任에 관한 綜合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CERCLA) 이를 Superfund Act라고도 함)을 制定하여 環境汚染業體에 대하여 엄격한 責任을 부과하고⁸⁾ 法院의 判決도 環境汚染賠償事件에 대한 判決에서 免責對象이던 漸進的인 汚染事故의 範圍를 지나치게 制限하므로⁹⁾ 汚染으로 인한 賠償責任에 대한 財政的인 擔保의 한 方法으로 賠償責任保險의 加入을 要求하고 있기 때문에 漸進的인 事故까지도 擔保하는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¹⁰⁾

나. 獨逸

獨逸에 있어서는 1990년 制定된 環境責任法(Umwelthaftungsgesetz von 1990)은 이 法에 따르는 物的, 人的, 生態學的인 損害에 대하여 엄격한 結果責任을 부과하고 環境責任法 附則에 이 法의 適用을 받을 施設物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이 法 附則2에 定하는 施設의 所有者는 環境損害에 대한 責任(法第1條)을 履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賠償準備策으로서 義務의으로 保險契約法 第158條 b項에 의한 責任保險에 加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法 附則1에 定하는 施設의 所有者는 任意로 賠償責任保險에 加入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즉 施設物의 種類에 따라 強制責任保險과 任意賠償責任保險에 加入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 保險은 一般賠償責任保險과는 달리 漸進的인 損害도 補償하도록 하고 있다.¹¹⁾

다. 日本

日本에서는 1992년 6월부터 日本의 AIU保險과 日本火災海上保險 및 安田火災海上保險의 三社가 共同으로 이 保險의 認可를 얻어 販賣하기 시작하였다.¹²⁾ 이 保險에 加入할 수 있는 被保險者는 環境汚染을 일으키는 廢棄物을 排出하는 者와 環境汚染을 발생시킬 危險物을 취급하는 者이며 業種이나 企業의 規模에 관계없이 環境汚染의 危險이 있는 業種의 企業은 모두 이 保險의 被保險者가 될 수 있다(日本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契約規定 I 3(이하 契約規定이라고 함). 日本에서는 이 保險이 施設所有管理者用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과 都給業者用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으로(契約規定 I 1)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이 保險이 對象으로 하는 施設과 作業에 관하여도 規定하고 있다(契約規定 II 4,5).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은 원칙적으로 이 保險과 같은 정도의 補償限度額을 擔保하는 一般賠償責任保險에 加入하지 않으면 안된다(契約規定 II 8). 물론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 契約規定에 따르면 不測의 突發的인 環境汚染事故뿐만 아니라 漸進的인 環境汚染事故도 擔保한다(契約規定 III 1).

라. 기타 유럽國家

英國,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등 북부

8) Kenneth S. Abraham, op. cit., p. 959ff. 環境責任의 擴張에 관하여는 ibid., pp. 972-976.

9) Kenneth S. Abraham, op. cit., p. 962ff.

10) 李在玟, "美國의 環境汚染 관련 保險制度", 損害保險(1989.10.), 11면.

11) Ernst Klingmueller, "Die Versicherung nach dem neuen Umwelthaftungsgesetz", Koreanisch-Deutsches Kolloquium ueber Umweltrecht(3-5. April 1992), S. 110-112.

12) 保險新報, 1992.7.20, 4면.

유럽지역의 각국의 경우를 보면 한결같이 環境汚染事故에 대하여는 嚴格責任의 原則에 입각하여 人的, 物的, 財政的 損害를 補償하도록 하고 있으며 英國은 環境保護法, 기타 다른 국가들은 保險契約法에 의하여 規律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強制環境損害保險(Compulsory Environmental Damage Insurance)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과 폴란드는 被害者의 直接請求權을 인정하고 있고 英國은 被保險者의 責任이 確定되고 被保險者가 支給不能이거나 破産한 경우에만 被害者의 直接請求權을 인정하고 있으며 英國環境保護法은 環境汚染의 原因이나 汚染發生日字에 관계없이 土地所有者에게 土地淨化費用을 負擔시키고 있다.¹³⁾ 벨기에는 廢棄物을 취급하는 企業에 대하여 強制保險을 시행하고 있고¹⁴⁾ 프랑스는 民法 및 廢棄物處理法에서 嚴格責任을 규정하고¹⁵⁾ 人的, 物的, 財政的 損害와 汚染淨化費用과 防禦費用도 補償한다.¹⁶⁾

마.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規定이 있는 것은 아니고 두개의 體制에 의하여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이 운영되고 있는 바, 陸上環境汚染事故에 대하여는 一般營業賠償責任保險 I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I)의 環境汚染賠償擴張擔保特別約款(Pollution Liability Coverage Extension Clause)에 의하여 施設과 業務로 急激하게 발생된 汚染事故로 인하여 他人에게 身體障害나 財物損害를 입

힘으로써 法律上 賠償하여야 할 責任있는 損害 및 汚染除去費用을 補償하도록 하고 普通約款의 免責事項은 適用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環境汚染賠償擴張擔保特別約款 II (Pollution Liability Coverage Extension Clause II)에서는 그밖에도 政府機關의 指示 또는 要請에 의하여 公害物質을 試驗, 檢査, 清掃, 除去 등 이를 取扱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損失 기타 費用을 補償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一般營業賠償責任保險 II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II)에서도 環境汚染賠償擴張擔保特別約款 I II가 있고 그밖에도 航空機燃料供給賠償責任保險(Aircraft Refuelling Liability Policy)이 放射能汚染 및 爆發性核組立品, 騒音, 公害 기타 危險을 擔保하는 特約條項등이 있다. 特別約款에 의한 一般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은 大林産業, 韓國가스, 漢陽化學, 麗水에너지, 韓國化學, 油公, 雙龍精油와 같은 油類製造加工業을 經營하는 大企業들만의 環境毀損事故를 擔保하기 위하여 利用되었다. 海上 油類汚染損害에 대한 油槽船所有者의 責任은 全술한 바와 같이 런던船主相互保險協會가 制定한 保護와 補償에 관한 規定(Protection and Indemnity Rules 9(Risks Coverage)(P & I 保險))第9條 1項에 規定하는 危險을 擔保한다.

3. 環境汚染事故의 特性

環境汚染事故는 첫째로 突發的이며 偶然的 特性을 갖는다. 1976년 이태리에서 발생한 SEVESO

13) 1993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그리스의 아덴에서 개최되었던 AIDA Pollution and Insurance Working Party의 設問 調査報告書에 의한 것임.

14) 河東璠, 앞 論文, 30면.

15) 앞 논문.

16) 朴恩會, 앞 論文, 10면.

事故나 1984년 인도에서 발생한 Bhopal事故 및 1986년 소련에서 발생한 Chernoby事件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事故는 突發的이며 偶然한 것이나 일단 環境汚染事故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被害의 規模는 일반적으로 大規模로 많은 人間의 生命, 身體上的 被害와 財産上的 損害 및 自然環境에 災害를 가져온다.¹⁷⁾ 그리고 毀損된 環境을 原狀回復시키기 위한 汚染除去費用 또한 엄청나게 크다.¹⁸⁾

둘째로 環境汚染事故는 漸進的인 特性을 갖는다. 環境汚染事故는 産業廢棄物에 水質汚染이나 土壤汚染을 일으키며 서서히 오랜시간에 걸쳐서 漸進的으로 進行되어¹⁹⁾ 事故의 發生 與否, 發生時點 및 事故의 原因등에 관하여 明確하게 糾明하기 어려우며 새로 개발된 化學物質의 毒性이나 産業廢棄物등의 環境汚染危險은 企業經營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²⁰⁾ 環境汚染事故가 일단 表面化되면 急激하고도 致命的인 큰 被害를 가져온다. 이로 말미암아 損害賠償問題는 技術的으로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따라서 環境汚染事故에 대한 賠償責任은 無過失責任主義에 의하여 嚴格責任의 原則이 인정되고 汚染事故에 관련되는 者는 共同으로 賠償責任을 負擔하는 連帶責任을 지게 된다.²¹⁾ 漸進的인 環境汚染事故를 擔保하는 경우에는 道德的인 危險

을 排除할 方法과 保險者의 免責範圍를 어떻게 定할 것인가가 중요 문제로 된다.²²⁾

세째로 汚染事故의 原因은 自然的인 것과 人爲的인 것이 복합적으로 얽히어져서 産業事故와 自然事故로 나누어져서 발생하지만 그 責任分擔部分은 均等하지 않고 自然은 人間이 방제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큰 被害를 입게 된다. 예를 들면 發電所나 工場의 鎔鑄爐에서 排出되어 나온 酸性비라든가 紫外線汚染, 소(牛)의 腦髓炎(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BSE), 生態工學, 原子力(날로 증가하는 原子力發電所) 및 海面上昇 등을 들 수 있다.²³⁾

네째로 위와 같은 事故는 그 豫測이 매우 어렵고 그 事故의 被害規模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被害者의 損害賠償請求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²⁴⁾

위와 같은 特性을 가진 環境汚染事故는 처음에는 地域的인 것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國際的인 地球規模로 되어 일상적인 經濟的 損失을 초월하여 文化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環境保護와 經濟發展, 自由貿易과의 관계에서 금세기 후반에 이르러 全人類, 企業 및 政府와 國際機關등의 中心關心事가 되어 있다.²⁵⁾

17) David Fleming(山口光恒譯), “環境問題の保險と法に與える影響”, *ジュリスト* (1991.11.1)(No. 989), 92면.; 柳榮植, “環境汚染事故의 被害補償 對策”, *위험관리학회지* 제2권(1992.3), 49-50면 참조.

18) 河東燾, 앞 논문, 29면.

19) 앞 논문, 29면.

20) Kenneth S. Abraham, op. cit., p. 953.

21) David Fleming(山口光恒譯), 앞 논문, 92면.; 柳榮植, 앞 논문, 50면.

22) Kenneth S. Abraham, op. cit., pp. 952-954.

23) David Fleming(山口光恒譯), 앞 논문, 92-93면.

24) 柳榮植, 앞 논문, 50면.; 河東燾, 앞 논문, 29면.

25) ジェ-ムズ, 카메론(山口光恒譯), “地球環境問題と環境法-その保險との關わり-”, *ジュリスト* (1992.3.15)(No.997), 65면.

이러한 環境汚染事故의 特性은 環境汚染事故를 保險으로 擔保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움을 낳게 하고 있다.²⁶⁾

이 保險은 保險期間中에 被保險者에 대한 賠償請求가 제기된 때를 保險事故(claim made-base)의 發生時點으로 하여 保險責任의 發生要件으로 하고 있으며²⁷⁾ 獨逸은 保險의 目的에 대하여 付保한 危險이 發生한 때를 保險事故(occurrence made-base)의 發生時點으로 한다.²⁸⁾ 美國은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에서 事故發生에 대한 溯及期間(retroactive date)을 설정해 놓고 그 期間中에 事故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保險事故를 擔保해 주도록 하고 있다.²⁹⁾

4.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의 機能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은 각종 環境汚染廢棄物을 排出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企業의 環境毀損이나 環境汚染事故로 인한 第三者의 損害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補償하는 保障手段으로서 또는 法律的인 要件充足을 위한 財政的인 手段으로서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³⁰⁾ 또 保險者가 保險契約條件이나 保險料의 調整을 통하여 被保險者인 環境汚染廢棄物을 排出하는 企業의 汚染活動行爲를 억제하며 保險事故의 發生을 效率的으로 억제하는 機能을 할

수 있고³¹⁾ 이 保險은 장래의 環境汚染의 賠償危險을 專門的으로 分析하여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改善策을 강구해 준다. 또한 이 保險은 資源의 效率的인 配分을 가져오는 規制手段으로서의 機能을 갖는다.³²⁾ 다시 말하면 이 保險은 環境汚染活動을 規制하고 資源의 效率的인 配分과 環境汚染을 일으킨 企業의 賠償資力을 확보해 줌으로써 被害者의 救濟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이 保險은 단지 事後的으로 保險金을 支給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補償機能뿐만 아니라 公害의 예방이나 防止에 기여하는 環境컨설팅의 측면을 갖고 있는 保險이다. 또한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을 利用하는 것은 企業이 여러가지로 광범위하게 社會福利를 위하여 기여하는 데에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³³⁾

5. 保險者の 損害補償範圍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은 環境汚染으로 인한 第三者의 身體上의 障害, 財産上의 損害 및 環境毀損에 대한 賠償責任 이외에 訴訟, 和解등 被保險者의 辯護에 따르는 法的 訴訟費用과 같은 防禦費用 및 環境毀損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支出된 應急復舊費用과 環境汚染除去淨化費用도 補償한다.³⁴⁾ 獨逸의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約款에 規定되어 있는 財産上의 危險은 先占權(Aneign-

26) Martin T. Katzman,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Through Insurance", Cato Journal Vol.6(Winter,1987), pp. 781ff.

27) 朴恩會, 앞 論文, 10면.

28) Erst Klingmueller, a. a. o., S. 112.

29) 李在珪, 앞 論文(損害保險), 14면.

30) 李在珪, 앞 論文(損害保險), 11면.

31) 李在珪, 앞 論文(보험개발연구), 7면. :

32) 李在珪, "앞 論文(보험개발연구), 8면. : Martin T. Katzman, op. cit., pp. 779-781.

33) Kenneth S Abraham, op. cit., p. 945.

34) 李在珪, 앞 論文(損害保險), 14면.

ungsrechten)의 損傷과 水資源使用權의 損傷 및 既提出한 營業權 또는 既取得한 營業權의 損傷에 의한 財産上의 損害를 補償하고 그 밖의 財産上 損害는 補償하지 않는다.³⁵⁾ 다른 損害를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財務損失³⁶⁾에 관하여는 獨逸,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네델란드 및 폴란드에서는 補償하고 핀랜드는 犯罪行爲나 行政機關의 權限에 의한 行爲를 原因으로 하는 경우에만 補償하며 그 밖의 국가에서는 이를 擔保하지 않는다. 罰金과 過怠料는 費用損害이지만 保險者가 不法行爲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擔保하지 않는다.³⁷⁾

獨逸은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約款에 그 付保하는 危險에 관하여 상세히 規定하고 環境汚染事故를 유발하게 될 危險要素를 保險契約者가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각 企業의 環境責任에 대한 安全度에 따라 각기 다른 保險保護를 하기 위함이다. 이 保險이 補償하는 損害는 保險物件의 生産, 加工, 組立, 保管, 運送에 부수된 施設로 부터 河川이 汚染된 水質汚染은 補償되지만 廢水施設의 使用에 관한 公法上의 規定 違反으로 인한 水質汚染損害는 補償되지 않는다. 또 保險契約者가 計劃, 製造, 供給 및 修理한 施設의 有害한 環境危害로 인한 損害는 補償되며 새로운 危險은 當事者가 별도로 約定하여야 하고 새로운 環境責任保險約款은 設備에 관련된 것으로써 施設이 다른 第三의 要因과 결합하여 環境汚染事故를 유발하는 一般環境危險을 의미하는 바 위의 保險約款에는 포함되지 않는다.³⁸⁾

日本의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이 擔保하는 損害는 다음과 같다(日本契約規定 II2).

- (1) 被害者에게 支給하여야 할 損害賠償金
- (2) 法令등의 命令에 의하여 支出한 汚染淨化費用
- (3) 應急手當, 護送에 所要된 費用 및 사전에 保險會社의 書面同意를 얻어 支出한 損害防止輕減費用
- (4) 求償權保全費用
- (5) 訴訟, 仲裁, 和解 또는 調停에 관하여 保險會社의 書面同意를 얻어 支出한 訴訟費用
- (6) 保險會社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解決에 협력하기 위하여 支出한 費用

그 밖에도 環境汚染對應費用擔保特約條項附契約은 다음의 費用을 擔保한다. 즉 被保險者가 災害를 입은 者の 위문등을 위하여 그 任員, 使用人 또는 그들의 代理人을 環境汚染事故發生地에 파견해야 할 交通費 및 호텔 등 客室費, 被保險者가 環境汚染對策本部를 설치한 경우의 호텔, 事務所 등의 施設賃借料 및 通信費用, 保險會社의 事前同意를 얻어 新聞등에 게재하는 사과문광고비를 擔保한다고 상세히 規定하고 있다.

獨逸은 漸進的인 損害에 대하여는 施設이 氣溫, 가스, 蒸氣, 溫度 또는 沈澱(연기, 그을름, 먼지 등)을 통하여 漸進的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발생한 損害를 말하는데 施設의 使用者가 사전에 이러한 漸進的인 損害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補償한다.³⁹⁾ 漸進的인 汚染事故는 발생하기 시작하면 統制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5) Ernst Klingmueller, a. a. O., S. 112.

36) K. enneth S. Abraham, op. cit., p. 972.

37) 朴恩會, 앞 論文, 10면-11면. : 앞 AIDA報告.

38) Ernst Klingmueller, a. a. O., S. 113.

統制할 수 있었던지 없었던지간에 마찬가지로 그 사실 발생후의 費用은 많이 들 것이다. 그러므로 漸進的인 事故에 대한 責任을 補償한다고 하는 것은 逆選擇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道德的인 危險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6. 免責事項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은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損害에 대하여는 保險者가 補償하지 않는다.⁴¹⁾

- 1) 被保險者가 所有하거나 管理하는 財産의 損失(日本은 留止請求, 約定에 의하여 加重된 賠償責任도 免責으로 하고 있음)
- 2) 油類나 가스 채취를 위한 Off-shore drilling 으로 인하여 발생된 汚染損害
- 3) 産業災害補償保險에서 補償되는 勤勞者의 損害
- 4) 定期的인 清掃費用
- 5) 環境關係法律이나 環境規制事項을 故意 또는 計劃적으로 違反함으로써 발생된 損失
- 6) 製品의 缺陷으로 인하여 購買者가 입은 損失이나 被害
- 7) 戰爭 또는 原子力危險으로 초래된 汚染損害(日本은 酸性비, 惡臭, 騒音, 振動, 土地의 變動, 日照不良으로 인한 損害도 免責으로 하고 있음)
- 8) 罰金 또는 過怠料費用

獨逸에서는 다음과 같은 損害는 이 保險에서 補償하지 않는다.⁴²⁾

- 1) 經營條件에 의한 環境影響이나 불가피한 環

境影響 및 필요한 環境影響이나 포기한 環境影響으로 야기된 損害. 그러나 保險契約者가 損害의 발생을 豫見하지 못하였음을 證明하면 그 損害는 補償된다.

- 2) 먼지 등에 의한 損害
- 3) 法の 規定을 違反하거나 技術的 指針이나 技術的 統制를 경시한 被保險者에 대한 補償請求
- 4) 遺傳學的인 損害에 대한 補償請求
- 5) 自動車, 船舶, 航空機등의 使用으로 인한 損害補償請求(日本은 鑛山, 溫泉, 海洋施設의 利用으로 인한 損害補償請求도 免責으로 하고 있음)
- 6) 環境責任法에서 賠償하여야 할 賠償責任限度額(2억6천만DM)을 초과하는 損害

그 밖에 日本은 初年度の 保險期間이 개시되기 전에 예견하였던 損害賠償請求 및 不動產價格의 下落으로 인한 損害도 補償하지 않는다(日本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普通保險約款 第5,6,7條).

7. 免責金額과 最高限度額

免責金額은 自家保險에 속하는 自己保有限度額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少額請求로 부터 保險者를 免責시키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保險料의 高額化를 防止하고 自己保有限度額을 增額함으로써 保險料를 낮출 수 있으며 環境을 汚染시키는 保險事故의 발생을 억제하는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自己保有限度額을 설정함으로써 道德的인

39) ebd., S. 112.

40) Kenneth S. Abraham, op. cit., p. 962.

41) 李在珪, 앞 論文(보험개발연구), 11면.

42) Ernst Klingmueller, a. a. O., S. 115-116.

危險을 排除할 수 있다.⁴³⁾ 美國은 25,000 \$에서 5백만 \$ 사이에서 自己保有限度額으로 하고⁴⁴⁾ 日本은 500만圓을 被保險者의 自己保有限度額으로 하여 保險者의 免責金額으로 하고 있다(日本契約規定 II 11).

각 국가는 保險者의 補償責任限度額을 설정하여 그 責任을 完化하고 있는데 獨逸은 環境責任法에서 補償하여야 할 賠償責任限度額을 2억6천만DM로 하고 있고 美國은 5백만 \$에서 20백만 \$, 英國은 8백만 \$, 이태리는 32백만 \$, 프랑스는 23백만 \$, 네덜란드는 8백만 \$, 스웨덴은 8백만 \$ 등으로 하고 있다.⁴⁵⁾ 또 日本은 損害額의 일정한 比率만을 축소하여 補償할 수 있도록 縮小填補特約條項(日本契約規定 II 7(2))을 두고 縮小填補比率를 最高 90%까지 任意로 約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즉 保險者는 損害額에서 自己保有限度額을 控除하고 縮小填補比率를 畧한 金額을 補償限度額의 範圍內에서 保險金을 支給한다.

8. 保險料

環境危險은 被保險者의 다양한 危險等級에 따르는 保險料率에 의하여 分散되는데 일반적으로 保險料는 被保險者의 企業運營에 대한 客觀的인 特性을 基準으로 定하는 豫定保險料와 과거에 被保險者의 損害經驗을 基準으로 定하는 經驗料率에 따르는 保險料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는 위의 두가지 保險料를 복합적으로 活

用하여 결정한다.⁴⁶⁾ 그리하여 豫定保險料는 被保險者의 事業의 總收入, 總生産高, 事業의 種類, 施設의 現存 및 과거의 상황, 事業運營의 方法, 廢棄物의 處理方法 및 運送區間, 環境保全對策, 財務內容 및 信用度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더우기 保險契約締結時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對象施設의 環境調査등 危險評價에 기하여 또 再保險에 부치는 경우에는 再保險料率을 고려하여 適用率을 결정한다(日本契約規定 II 12). 豫定保險料는 被保險者로 하여금 낮은 保險料를 保障받기 위하여 排出量을 減少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經驗保險料는 損害經驗이 保險料率에 영향을 미치므로 被保險者로 하여금 企業을 가능한 한 安全하게 運營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⁴⁷⁾ 이 保險制度가 惡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保險料의 割増制와 損害防止義務를 부과하는 方法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⁴⁸⁾

最低保險料는 日本에서 施設所有管理者特別約款附契約에 관하여는 200만圓 또는 補償限度額 1,000圓에 대하여 5圓에 상당하는 金額중 높은 金額으로 하고 都給業者特別約款附契約에 관하여는 100만圓 또는 補償限度額 1,000圓에 대하여 5圓에 상당하는 金額중 높은 金額으로 한다(日本契約規定 II 14)고 規定하는 것과 같이 最低保險料와 補償限度額에 대한 單位料率을 畧한 金額중 높은 金額으로 할 수 있다.

43) Kenneth S. Abraham, op.cit., pp.951-952.

44) 河東燾, 앞 論文, 30면.

45) 河東燾, 앞 論文, 30면.; 柳榮植, 앞 論文, 59면.

46) Kenneth S. Abraham, op.cit., p.949.

47) ibid., pp.949-950.

48) 朴恩會, 앞 論文, 7면.

9. 共同保險

이 保險의 補償限度를 높이기 위하여 共同保險 制度를 둘 수 있다.⁴⁹⁾ 日本契約規定에 따르면 共同保險契約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幹事會社는 保險引受에 필요한 모든 情報을 開示하지 않으면 안되고 非幹事會社는 開示된 情報에 관하여 秘密을 유지하여야 할 義務를 負擔한다(契約規定 II 16).

주요국가들의 保險引受運營에 있어서 原受保險이나 또는 再保險을 pool로 引受하여 保險者의 補償能力을 補完하고 있다.⁵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을 pool로 引受하여 運營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III.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의 導入方案

環境汚染事故를 발생시킬 危險이 있는 企業이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에 加入하는 경우에는 保險料의 納入이 生産費의 增額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企業負擔의 增加는 결국 消費者價格에 영향을 미치는 바 우리의 경제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특히 大企業은 대체로 安全施設도 갖추어가면서 生産管理를 하고 危險物을 管理取扱하며 또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이런 경우에 그 保險料의 策定에 있어 그 企業의 상황이 감안되어 保險者도 이들 企業과 保險契約를 締結할 것으로 생각되나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그 保險料의 費用負擔이 企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이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保險의 有用性은 절감하지만 이를 制度化하여 우리나라에 정착시켜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環境問題는 하나밖에 없는 地球問題이며 이제는 國際的인 인류공동의 시급한 重大課題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環境汚染을 이유로 하여 貿易規制를 하려는 國際的인 움직임을 감안해 볼 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問題의 當爲性을 고려하여 시급히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環境汚染事故에 대한 政策이 基本的으로 그 事故의 抑制와 資源의 效率的인 配分이나 事後管理의 履行을 規制하기 위한 手段에 역점을 둔다면 直接的인 汚染排出施設에 대한 規制나 公害稅金 또는 罰課金の 賦課 또는 環境汚染負擔金을 賦課하는 方法으로도 規制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⁵¹⁾ 環境汚染事故로 인한 被害者의 人的, 物的 損害를 迅速하고 適切하게 補償할 수 있는 保障手段이면서 동시에 環境汚染事故를 일으킬 危險이 있는 企業의 汚染活動行爲를 抑制하고 保險事故의 발생을 效率的으로 抑制하는 機能을 가진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制度가 훨씬 더 有效適切한 制度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制度를 면밀히 檢討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制度를 강구하여 이를 導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導入方案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提議해 본다.

49) 앞 논문, 9면.

50) 李相和, 앞 論文, 169면.

51) 李在玆, 앞 論文(보험개발연구), 17면.

1. 強制保險

環境汚染事故의 危險이 있는 일정한 施設을 所有 또는 管理運營하는 者는 獨逸의 경우와 같이 類型別로 나누어 強制保險과 任意保險으로 運營한다. 그리하여 構造的인 保險事故의 發生을 抑制하고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의 共同準備財産을 마련하여 事故發生에 대한 對備策을 강구하도록 한다. 이미 環境汚染事故에 대비한 費用을 社會福利費用으로 간주하고⁵²⁾ 環境危險은 社會危險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스웨덴이 強制保險으로 運營하면서 국가가 이를 위한 基金을 마련하고⁵³⁾ 있는 점은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고 본다.

2.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의 補償範圍

이 保險이 擔保하는 危險은 突發의이고 漸進의인 危險도 保險事故로 擔保하고 人的, 物的 및 財務損失과 損害防止費用, 汚染除去費用 및 法的訴訟費用과 防禦費用까지도 補償하도록 하되 罰金과 過怠料는 다른 外國에서와 같이 擔保하지 않도록 한다. 道德的인 危險과 逆選擇을 排除함으로써 危險을 合理的으로 分散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自己保有限度額을 設定하여 被保險者로 하여금 事故發生을 自律적으로 抑制하게 하고 각국가가 規定하고 있는 것과 같이 免責條項을 상세히 規定할 필요가 있다.⁵⁴⁾ 또한 保險者의 補償範圍의 最高限度額制度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保險料

전술한 바와 같은 環境汚染事故의 特色으로 말미암아 適切な 保險料를 策定하는 問題는 이 保險制度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問題이다. 環境危險의 豫測과 料率算出의 技術的인 어려움과 아울러 保險引受者의 專門的인 技術이 確保되어야 하는 것이며 情報, 擔保力, 保險料의 負擔能力, 危險管理能力 및 保險監督上的 制約등의 問題도 부수된다.⁵⁵⁾ 무엇보다도 중요한 問題는 適切な 保險料率體系를 確保하여 保險者가 逆選擇을 강요당하는 危險이 없어야 하며 被保險者도 保險加入에 무거운 負擔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豫測保險料와 經驗率등 保險料의 割増制를 導入하여야 할 것이다.

4. 再保險制度의 檢討

保險者의 引受限度額이 現實적으로 補償하여야 할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위하여 국가가 超過再保險을 引受하는 方法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環境汚染損害賠償責任保險에서 스웨덴이 國家基金制度를 마련한 것이나 社會危險으로 간주되는 地震을 日本政府가 再保險으로 引受하는 것이나 美國이 國家機關인 Federal Insurance Administration(FIA)이 각주의 保險會社들이 FAIR Plan에 의하여 共同引受하는 暴動危險을 再保險으로 引受한 바는⁵⁶⁾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52) 柳榮植, 앞 論文, 52면.: Kenneth S. Abraham, op. cit., p. 945.

53) 朴恩會, 앞 論文, 11-12면. AIDA報告.

54) Kenneth S. Abraham, op. cit., p. 949.

55) 朴恩會, 앞 論文, 9면.

56) 앞 論文 12면.

海外保險市場에서의 再保險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IV. 結論

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現代產業社會가 직면하고 있는 環境問題는 심각하고 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地球的인 규모의 인류 전체의 共同課題이다.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의 保險事故는 무엇보다도 점진적으로 발생하지만 일단 그 결과가 표출되는 경우에는 損害의 규모가 방대하고 人的, 物的 損害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環境汚染損害를 일으킬 危險物을 製造, 加工, 運搬 기타 取扱하는 者は 사전에 各種의 環境關係法規와 그 規制 및 統制를 준수하여 環境汚染損害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재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環境汚染損害事故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被害者에 대한 損害를 救濟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의 利用이 조심스럽게 주장되었다. 이미 獨逸이나 美國 및 日本등에서 이를 개발하여

利用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도 그 保險의 必要性이 있어 위에서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制度의 導入方案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이 전술한 바와 같이 環境汚染活動을 規制하고 資源의 效率의인 配分과 環境을 汚染시키는 企業의 賠償資力을 확보해줌으로써 被害者의 救濟에 기여하는 社會的機能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에서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企業이 영세하여 被害者에 대한 賠償資力이 부족한 점이나 環境汚染事故의 損害規模의 방대함을 감안해 볼 때 다른 어떤 規制手段보다도 被害者救濟를 위하여는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이 有效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거나 이를 取扱 또는 運搬하는 企業도 이 保險의 必要성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企業責任意識을 인식하고 이 保險에 관한 국민들의 意識教育도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保險者들도 현재 環境問題의 심각성과 環境條件을 이유로 貿易規制를 할 國際的인 추세가 國內經濟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하여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